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7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관계 기관 의견	5

I. 개요

1.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47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1. 30.
- (3) 회 부 일 : 2026. 2.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u> 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 <u>복무기간</u>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

현행	개정안
	「역법」에 따른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2007년 7월 법률 제8541호로 공포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도입된 군복무크레딧은 당초 6개월까지의 군 복무기간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¹⁾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2025년 4월 법률 제20903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12개월까지의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게 되었음.²⁾

-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의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군복무크레딧보다 보장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1)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2007. 7. 23. 전부개정, 2008. 1. 1. 시행]

2)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2025. 4. 2.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경우 군복무에 따른 보상이 강화되고,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종전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 2025년 4월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 강화 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조율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5년 2월 20일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정부는 군복무크레딧 확대에 따른 대규모 재정 소요를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효과성이나 기존 다른 제도와와의 정합성 및 병사 월급의 증가 추세(2026년 병장 기준 150만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음.

□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확대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한지아의원(의안번호 제8591호), 위성곤의원(의안번호 제9304호), 백선희의원(의안번호 제10576호) 및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1651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군복무크레딧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